

# 드림스타트 심리상담·발달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서

서울특별시 중구청(이하 “중구”라 한다)과 서울시립 강북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(이하 “서비스기관”이라 한다)는 중구드림스타트 “심리상담 및 발달치료 지원 사업” (이하 “본사업”이라 한다)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서는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 긴밀한 협조 하에 “본사업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**제2조(협약사업개요)**

1. 사업명 : 중구드림스타트 심리상담·발달치료 지원 사업
2. 협약기간 : 2024년 1월 ~ 2024년 12월
3. 지원대상
  - 가.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인지·언어, 정서·행동 영역이 취약하여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
  - 나.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 중, 아동 양육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심리상담 및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
4. 지원내용 : 아동 및 부모(양육자) 상담 및 치료
5. 비용의 분담 : 검사비 및 치료(상담)비

구분	본인부담금	서비스기관 부담금	중구부담금	비고
검사비 부담율	-	-	100%	검사비 22만원
상담(치료)비 부담율	4,000원 (10%)	10,000원 (25%)	26,000원 (65%)	1회기 4만원
부모(양육자) 상담비	5,000원	-	15,000원	1회기 2만원 기본10회기

6. 기타사항 :
  - 가. 평가나 검사 관련 비용 발생시 “중구”에서 부담
  - 나. 비용 변경 발생시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 간 협의 조정 후 진행

**제3조(업무분담 및 협의)**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은 “본사업”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“중구”는 “본사업”에 적합한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연계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“서비스기관”과 협의하여 조정한다.
2. “서비스기관”은 사전 협의된 업무사항을 준수하여 대상 아동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발달치료를 적극 지원한다.
3. “서비스기관”은 “중구”에서 대상 아동의 발달 변화에 대한 상담 및 사례회의 참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#### **제4조(협약기간)**

1. 협약기간은 2024. 01.부터 2024. 12. 31.까지로 하며,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상호간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2.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진행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# **제5조(사업비 지급)**

1. “서비스기관”은 매월 심리상담 및 발달치료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과 비용청구 내역을 “중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가. 본인(지원 대상자) : 본인 부담금은 “서비스기관”에 직접 납부 (월별 납부)
  - 나. 서비스기관 : 본인 부담금 및 서비스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“중구”에 청구
  - 다. 중구 :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“서비스기관” 계좌로 입금
2. 심리상담 및 발달치료 비용 청구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, “서비스기관”은 상담 및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상호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“중구”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3. 지원대상자(상담 이용자)가 예약 내용을 당일에 변경하거나 연락없이 상담에 오지 않을 경우 “중구”는 사전협의한 상담(치료)비를 지급한다.

**제6조(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의사항)**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은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준수하되, 해당 사항의 불이행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귀책 당사자에게 귀속한다.

**제7조(신의성실의 원칙)**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### **제8조(비밀유지 의무)**

-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정보(제3자에 대한 정보 포함)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항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, 해지,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.
- 본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귀책 당사자 또는 비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**제9조(협약의 효력 등)**

- 이 협약의 효력은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.
-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,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1. 3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김 길 성



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  
센터장

김 지 연

